

항공산업정책연구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항공산업정책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Air Industry and Policy Research, 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칭하고,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조 (목적) 국내외의 항공, 물류 및 관련산업에 대하여 법제정책, 역사 및 환경의 변화와 항공산업의 경제, 경영학적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연구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정기 간행물 및 전문도서의 간행 배포
3.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4. 외부로부터 위촉된 것의 조사연구 및 기업진단
5. 특수연구 계획과 이에 대한 연구비 보조
6. 국외 저명한 기관과의 연결 및 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 파견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 ①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부, 교육훈련 및 출판을 담당하는 교육훈련부,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부를 둔다. 연구부, 교육훈련부, 국제협력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부장, 교육훈련부장, 국제협력부장을 각 1인씩 둔다.

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계속적인 연구업무, 교육훈련업무, 국제협력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업무, 교육훈련업무, 국제협력업무 추진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으로 하고 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본 연구소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 (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과 간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연구원) 연구소의 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자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한국항공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정한다.
2. 기관회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활동에 관련이 있거나 찬조하는 단체로서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련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한 자를 특별연구원으로, 연구소에 상주하는 국내·외 관계학자를 객원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또한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소장으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를 1학기 중 개최하여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3 장 제 정

제10조 (재정) 매 회계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매 회계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